

수원지방법원 2017. 9. 27 선고 2017가단113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b

2.c

3.d

4.e

5.f

6.g

7.h

변론종결 2017.8.23.

판결선고 2017.9.27.

주 문

1.원고에게,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 피고 b은 별지2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.

2.피고 b에게 별지 2 기재 건물의 별지 3 도면 표시 중,

가.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지하 1층 (6),(7),(8),(3),(4),(5),(6)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
(나)부분 33.34㎡

나.피고 d는 같은 도면 표시 지상 1층 (1),(2),(3),(8),(7),(6),(1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
부분 35.89㎡를,

다.피고 e,f 은 같은 도면 표시 지상 1층 (6),(7),(8),(3),(4),(5),(6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
(라) 부분 33.34㎡,

라.피고 g,h은 같은 도면 표시 지상 2층 (1),(2),(3),(4),(1)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바)부분
7.75㎡를

각 인도하라.

3.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제1항,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인정사실

가.원고는 2007.1.5. 별지 1 기재 토지(이하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i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7.2.1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피고 b은 1996.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2 기재 건물(이하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 을

건축하였고,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

다. 피고 c은 별지 3 도면 표시 지하 1층 (6),(7),(8),(3),(4),(5),(6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3.34㎡을 피고 d은 같은 도면 표시 지상 1층 (1),(2),(3),(8),(7),(6),(1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35.89㎡ 을, 피고 e,f은 같은 도면 표시 지상 1층 (6),(7),(8),(3),(4),(5),(6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라) 부분 33.34㎡ 를, 피고 g,h은 같은 도면 표시 지상 2층 (1),(2),(3),(4),(1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마)부분 69.23㎡, 같은 도면 표시 옥탑 (1),(2),(3),(4),(1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바) 부분 7.75㎡를 각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

피고 b,d: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피고e,f,h: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(지백간주 판결)

피고 c,g: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, 피고 c,d,e,f,g,h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산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 사 [별지1]

토지 표시

경기도 광주시 전 134㎡

[별지2]

철거할 건물 표시

경기도 광주시 전 134㎡ 지상에 있는 지하 1층, 지상 1층, 2층 주택 전부

